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법예고 종법령명 | 신도전문교육기관령 개정안 | | |
| 담 당 | 포교원 포교부 신도팀 (02-2011-1896) | 입법예고일 | 2025년 2월10일 ~ 3월 1일 |

1. 이유 및 취지

-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신도전문교육기관의 관장 부서 등 변경 및 자구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신도전문교육기관 지정, 운영, 설립, 인가 및 학사관리, 포상 등의 관장 부서 변경함(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3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 개정).
- 나. 유명무실화된 신도품계 제도를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(제24조 개정)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 제16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신도전문교육기관의 인가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이 영은 신도법에 의하여 신도전문교육기관의 인가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3조(교육기관 종류) 포교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다. 1.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2.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3. 불교상담대학 4. 대한불교교사대학 5. 기타 포교원회의 의결로 지정된 교육기관 | 제3조(교육기관 종류) 포교부 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한다. 1. 중단 인가 불교대학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기타 교육기관 |
| 제4조(교육기관의 지위 및 역할) 각급 교육기관의 지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불교대학 : 포교원 인가를 받은 단위사찰 또는 지역의 연합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교학의 이해와 신행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. 2.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: 포교원에서 설립한 정보통신매체 신도교육 및 포교 교육기관으로 사이 | 제4조(교육기관의 지위 및 역할) 각급 교육기관의 지위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불교대학 : 중단 인가를 받은 단위사찰 또는 지역의 연합 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교학의 이해와 신행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. 2.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대학 : 중단 에서 설립한 정보통신매체 신도교육 및 포교 교육기관으로 사이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버 상의 신도교육 및 각종 포교자격직 양성교육을 시행한다.</p> <p>3. 불교상담대학 : 포교원 인가 불교상담심리사 양성기관으로 불교상담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과정을 교육한다.</p> <p>4. 대한불교교사대학 : 포교원 인가 불교어린이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유아, 어린이 대상 포교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과정을 교육한다.</p> <p>5. 포교원 지정 교육기관 : 특정분야에 대한 신도전문교육에의 필요에 따라 포교원 포교부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해당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.</p> | <p>버 상의 신도교육 및 각종 포교자격직 양성교육을 시행한다.</p> <p>3. 불교상담대학 : 중단 인가 불교상담심리사 양성기관으로 불교상담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과정을 교육한다.</p> <p>4. 대한불교교사대학 : 중단 인가 불교어린이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유아, 어린이 대상 포교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과정을 교육한다.</p> <p>5. 기타 교육기관 : 특정분야에 대한 신도전문교육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해당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.</p> |
| <p>제6조(교육 내용)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 및 교과는 포교원에서 정한다.</p> | <p>제6조(교육 내용) 교육기관별 교육 내용 및 교과는 포교부에서 정한다.</p> |
| <p>제9조(기관의 설치) 포교원장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.</p> | <p>제9조(기관의 설치) 포교부장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1조(설립인가) 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중단에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도법 제15조에 의하여 포교원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기관 설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④ 교육기관은 기관을 휴교·폐교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포교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| <p>제11조(설립인가) 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중단에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도법 제15조에 의하여 중단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교육기관 설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④ 교육기관은 기관을 휴교·폐교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포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|
| <p>제12조(지도감독) ① 교육기관은 신도법 제12조에 의하여 포교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</p> | <p>제12조(지도감독) ① 교육기관은 신도법 제12조에 의하여 포교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5조(교육기관장) ① 교육기관장은 구축계를 수지하고 중덕(정덕)법계를 품수 한 조계종 승려로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장은 당해 전문교육기관을 대표하며, 학사운영을 통리한다.</p> | <p>제15조(교육기관장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③ 교육기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,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</p> | <p>③ 교육기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, 포교부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</p> |
| <p>제16조(교수) ①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축계를 수지하고 중덕(정덕) 법계를 품수 한 조계종 승려 2. 중단 교법사 자격을 가진 자 3. 중단 신도등록자 중 해당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인 자 4. 포교원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<p>② 교수는 교육기관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.</p> | <p>제16조(교수) ①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포교부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7조(보고) ① 교육기관장은 매 학년 시작 1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장은 매 학기 시작 1월 이내에 학생 현황, 교수현황, 교과목, 교재 등 학사전반에 대하여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7조(보고) ① 교육기관장은 매 학년 시작 1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장은 매 학기 시작 1월 이내에 학생 현황, 교수현황, 교과목, 교재 등 학사전반에 대하여 포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19조(교육교재) ① 교육기관의 공통 및 필수과목은 중단에서 편찬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선택과목 교재를 포교원장에게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교육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9조(교육교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선택과목 교재를 포교부장에게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교육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20조(학사관리)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포교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학사관리에 필요한 양식은 포교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.</p> <p>③ 포교원은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포교원이 3항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때는 감사 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수검사항, 제출서류, 감사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20조(학사관리)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포교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학사관리에 필요한 양식은 포교부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.</p> <p>③ 포교부는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.</p> <p>④ 포교부가 본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때는 감사 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수검사항, 제출서류, 감사 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
| <p>제23조(졸업요건) ① 졸업 평가는 각 교육기관에 적합한 검증방법으로 학칙으로 정하되 다음의 각 호의 필수 졸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 수업일수의 80% 이상 출석 | <p>제23조(졸업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2. 교육기관 중 중단인증 교육연수에 1회 이상 참석</p> <p>② 교육기관장은 매년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출석부 사본과 제1항 제2호의 교육연수 수료증 사본, 신행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 졸업 1개월 전까지 포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불교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중단 졸업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교육기관장 명의의 졸업증을 교부한다.</p> | <p>② 교육기관장은 매년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출석부 사본과 제1항 제2호의 교육연수 수료증 사본, 신행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 졸업 1개월 전까지 포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4조(졸업증 및 신도품계 수여) ① 교육기관은 당해 졸업자에게 당해 기관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.</p> <p>② 포교원은 교육기관의 졸업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품계회장을 교부하며, 교육기관장은 졸업자에게 신도품계를 품서한다.</p> | <p>제24조(졸업증 수여) 교육기관은 당해 졸업자에게 당해 기관장 명의의 졸업증을 수여한다.</p> <p>② <항 삭제></p> |
| <p>제25조(자격부여) ①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게는 이수 분야에 대한 자격고시 및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자격고시의 증별 및 응시방법은 포교원 내규로 정한다.</p> | <p>제25조(자격부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자격고시의 증별 및 응시방법은 포교부에서 정한다.</p> |
| <p>제26조(포상) ① 포교원장은 전문교육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포교원장은 매년 교육기관별로 모범적인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포상은 해당 교육기관장이 추천하며 포교원장이 심사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④ 포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교원회의를 거쳐 포교원장이 정한다.</p> | <p>제26조(포상) ① 포교부장은 전문교육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.</p> <p>② 포교부장은 매년 교육기관별로 모범적인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.</p> <p>③ 포상은 해당 교육기관장이 추천하며 포교부장이 심사하여 상신한다.</p> <p>④ 포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교부장이 정한다.</p> |
| <p>제27조(업무소관) 교육기관에 관한 업무 소관은 포교원으로 한다.</p> | <p>제27조(업무소관) 교육기관에 관한 업무 소관은 포교부로 한다.</p> |
| <p>제28조(운영규칙) 교육기관의 설치, 인가,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28조(운영규칙) 교육기관의 설치, 인가,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
| <p><신설></p> | <p>부칙<불기2569(2025).00.00 개정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|